

#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

시행일: 2014. 3. 1.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연계전공”이란 모집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,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가 연계하여 새로운 전공을 편성하고 다전공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공을 말한다.

② “주관학과 및 주관대학”이란 연계전공을 대표하여 전공 운영을 담당하는 학과(전공) 및 단과대학을 말한다.

③ “참여학과”란 주관학과 이외에 연계전공 운영을 위해 참여한 학과(전공)를 말한다.

제3조(이수대상) ① 본교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② 연계전공은 다전공 과정으로만 이수할 수 있으며, 단일전공 과정으로 이수할 수 없다.

제4조(연계전공 설치 신청) ① 연계전공은 본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의 합의와 관련 학과(전공) 교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설치 발의할 수 있다.

② 연계전공 주관대학의 학장은 주관 및 참여학과(전공)의 교수 동의를 포함한 운영계획서(소정 양식)를 작성하여 6월말 이전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계전공의 설치) ① 교무처장은 연계전공 주관대학 학장의 설치 요청을 받아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연계 전공의 설치를 확정한다.

제6조(교육과정 편성원칙) ① 교육과정 편성은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 단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편성하며, 각각의 학과(전공)별 최소 이수기준을 명시하여 각 학과(전공)별 교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

② 교육과정은 교양을 제외하고 100학점 이내에서 교과목을 편성한다.

③ 연계전공 운영 시 기존의 개설과목을 활용하도록 하며 신설과목은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신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2개 과목 이내에서 하되, 관련 학과(전공) 학과장(전공지도교수) 및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수학점) ① 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전공이수학점 및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위를 부여한다.

② 전공인정학점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합하여 최소 36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③ 본인 소속학과(전공)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교차 인정할 수 있다. 교차인정의 최대범위는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학점을 합하여 비교직과정 연계전공은 9학점 이내에서, 교직과정 연계전공은 15학점 이내로 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계전공별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전공의 선택) 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전공과정으로 연계전공을 선택하여야 하며,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전공 승인제도에 의거 이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② 연계전공 지도교수는 신청자 중 소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연계전공 이수를 불허할 수 있다.

③ 이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계전공을 이수한 자는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.

제9조(연계전공의 폐지) ① 최근 3년간 연계전공 이수자가 30명 미만이거나 또는 연계전공 졸업자가 3년간 30명 미만인 연계전공은 폐지 대상으로 한다.

② 교무처장은 주관학과와의 협의 후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연계전공을 폐지한다.

③ 폐설된 연계전공은 연계전공 이수신청자가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과목을 운영한다.

제9조(학위수여) 연계전공 교육과정에서 지정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해당 연계전공명이 표기된 학위를 부여 한다.

제10조(학칙의 준용)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에 준용한다.

## <부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<부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부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부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